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1. 13 선고 2019가단24115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1. 주식회사 C

2. 주식회사 D

특별대리인 E

3. F

4. G

5. H

6. I

피고(선정당사자)J

변론 종결2020. 10. 23.

판결 선고2020. 11. 13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주식회사 C, 주식회사 D, F, G, H, I는 연대하여 976,621,451원과 그 중 302,552,054원에 대하여,

나. 망 K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, 위 가.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가.항 기재 돈 중,

(1) 선정자 L는 325,540,483원과 그 중 100,850,684원에 대하여,

(2) 피고(선정당사자), 선정자 M, N은 각 217,026,989원과 그 중 67,233,789원에 대하여
각 2007. 10. 6.부터 2009. 4. 28.까지 연 18%의, 그 다음날부터 2015. 9. 30.까지 연 20%의, 그
다음날부터 2019. 5. 31.까지 연 1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
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원고의 피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, 주식회사 D, F, G, H, I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,
원고와 피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의 가.항과 같은 판결과 원고에게, 선정자 L는 주문 제1의 가.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
주문 제1의 가.항 기재 돈 중 325,540,483원과 그 중 100,850,684원에 대하여, 피고(선정당사자),
선정자 M, N은 주문 제1의 가.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주문 제1의 가.항 기재 돈 중 각
217,026,989원과 그 중 67,233,789원에 대하여 각 2007. 10. 6.부터 2009. 4. 28.까지 연
18%의, 그 다음날부터 2015. 9. 30.까지 연 20%의, 그 다음날부터 2019. 5. 31.까지 연 15%의,
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인정사실

(1) 원고는 1994년 피고 주식회사 C(이하 '피고 C'이라고 한다)과 사이에, 피고 C과 ○ 주식회사가

체결한 상가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급보증을 위하여 이행(지급)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, 피고 주식회사 D(이하 '피고 D'라고 한다), F, G, H, I와 K이 위 이행(지급)보험계약에 의한 피고 C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.

(2) 피고 C이 ○ 주식회사에 대한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1995. 5. 9. ○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302,552,054원을 지급하였다.

(3) 원고는 2007. 12. 3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73301호로 피고 C, D, F, G, H, I와 K을 상대로 한 위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금(이하 '이 사건 구상금'이라고 한다) 청구를 포함하여 피고 C을 주채무자로 한 10건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.

(4)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. 5. 26.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, 그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는데, 그 주문에는 이 사건 구상금으로 '피고 C, D, F, G, H, I, K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6,621,451원과 그 중 302,552,054원에 대하여 2007. 10. 6.부터 2009. 4. 28.까지 연 18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'이 포함되어 있다.

(5) K은 2016. 1. 21.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선정자 L, 자녀인 피고(선정당사자), 선정자 M, N을 두고 사망하였다.

(6) 원고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에게 피고 C, D, F, G, H, I는 연대하여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이 사건 구상금을, 피고(선정당사자)와 선정자들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이 사건 구상금 중 망 K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피고(선정당사자)의 항변에 대한 판단

피고(선정당사자)는 피고(선정당사자)와 선정자들이 망 K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항변한다.

피고(선정당사자)와 선정자들이 2016. 2. 3.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972호로 망 K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6. 7. 7.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(선정당사자)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망 K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구상금 중 망 K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따라서 피고(선정당사자)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에게, ① 피고 C, D, F, G, H, I는 연대하여 976,621,451원과 그 중 302,552,054원에 대하여 2007. 10. 6.부터 2009. 4. 28.까지 연 18%의, 그 다음날부터 2015. 9. 30.까지 연 20%의, 그 다음날부터 2019. 5. 31.까지 연 1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, ② 망 K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돈 중 선정자 L는 325,540,483원($= 976,621,451원 \times 3/9$, 원 미만 버림, 이하 같다)과 그 중 100,850,684원($= 302,552,054원 \times 3/9$)에 대하여, 피고(선정당사자), 선정자 M, N은 각 217,026,989원($= 976,621,451원 \times 2/9$)과 그 중 67,233,789원($= 302,552,054원 \times 2/9$)에 대하여 각 2007. 10. 6.부터 2009. 4. 28.까지 연 18%의, 그 다음날부터 2015. 9. 30.까지 연 20%의, 그 다음날부터 2019. 5. 31.까지 연 1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, 원고의 피고 C, D, F, G, H, I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, 원고의 피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판사고홍석

별지